

의안 번호	1841	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11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1. 11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3.(금)

2. 제안 이유

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1년도 말 조성액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도 말 조성액	비 고
	수 입	지 출	증 감		
1,000,000	1,001,170	1,001,170	0	1,000,000	

- 수입계획

- 예치금 및 정기예금이자 회수 : 1,001,170천원
-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: 1,000,000천원

- 지출계획

-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: 1,001,170천원
- 예치금 : 1,000,000천원

4. 근거 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5. 검토 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